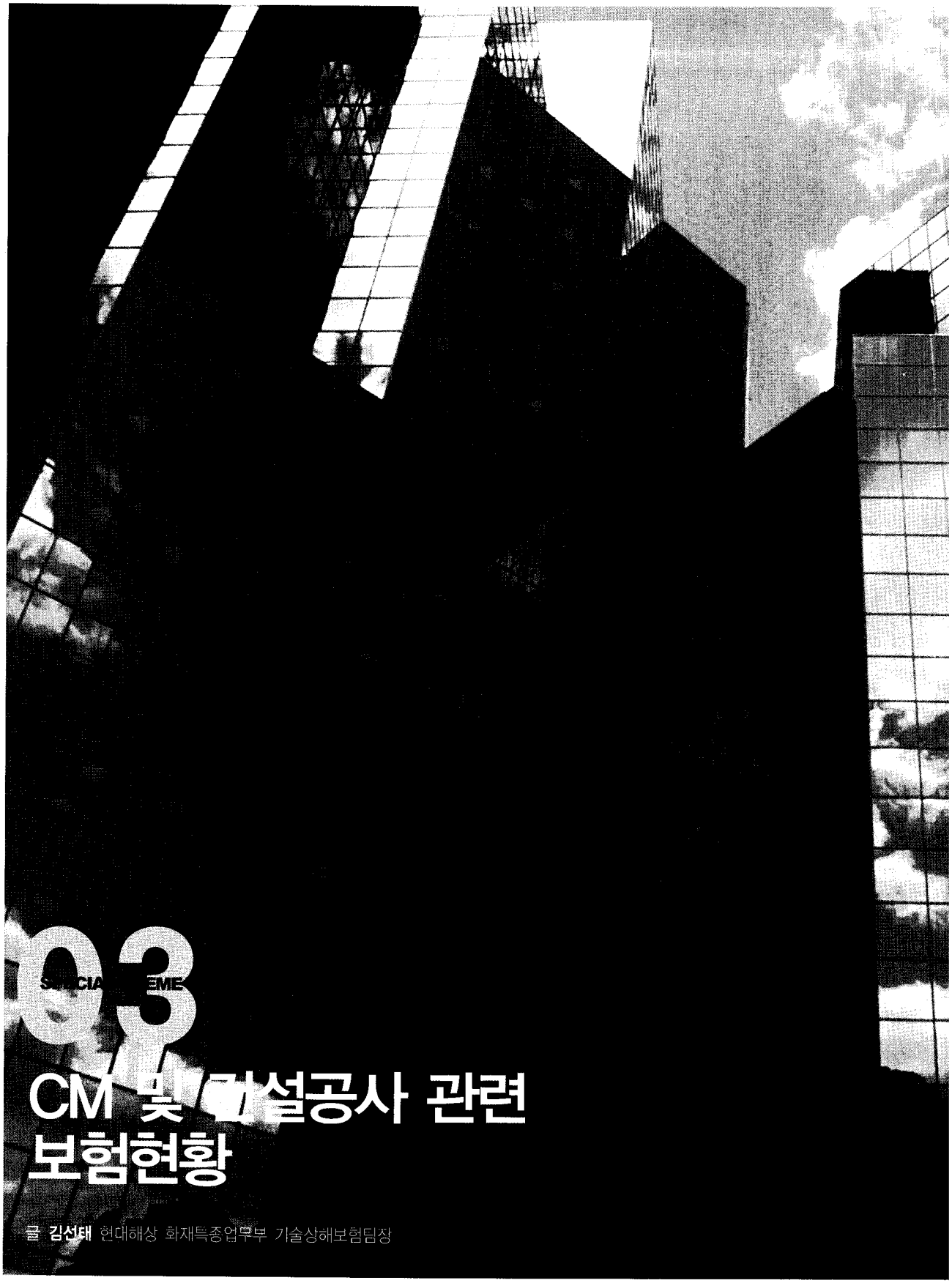

03

SPECIAL THEME

CM 및 건설공사 관련 보험현황

글 김선태 현대해상 화재특종업무부 기술상해보험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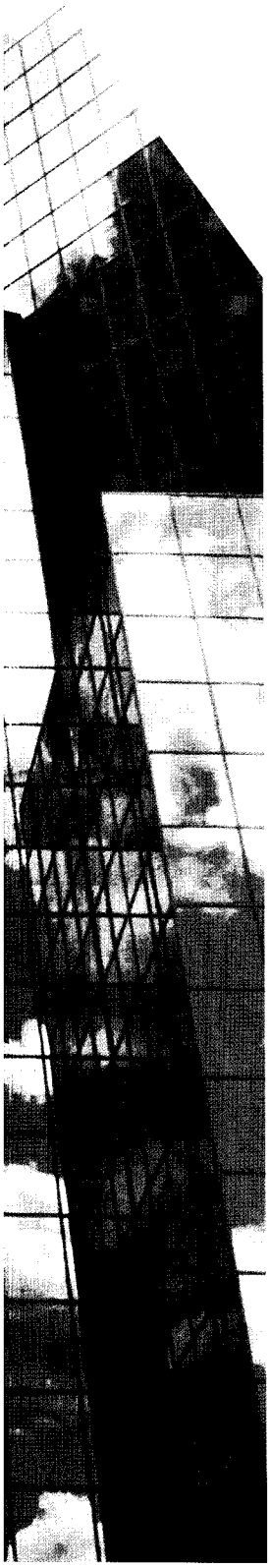

1. 머리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4년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계속되는 대형공사의 부실시공 사례 등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단일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로 인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발주기관에서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내에도 CM(Construction Management)이 도입되었고 공공부문에서도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시작으로 영광 3, 4호기 원자력 건설사업, 경부고속철도사업, 부산신항만공사 등이 CM으로 건설되었고, 일반적인 빌딩공사와 같은 시설물들도 CM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감리와 CM의 차이는 감리는 주로 설계가 시공방법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 업무로 시공단계의 품질관리만을 수행하지만, CM은 건설사업 전단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며 효과적인 프로젝트의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 CM 및 감리의 업무는 모두 목적하는 프로젝트의 성공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보험의 적절한 가입의 검토는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관련 보험은 프로젝트의 성공의 기초를 제공한다.

건설프로젝트와 관련된 보험으로는 공사자체 목적물에 대한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과 전문가인 건축사, 설계사 등에 대한 전문직업행위 및 의무이행에 대한 배상책임영역으로 단체공제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또한 보증보험영역으로 설계감리보증보험이 있다.

2. 관련 보험

가. 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 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기계 · 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빌딩, 각종 공공건물 등의 건축공사 (신축 및 증축 등), 공업단지 조성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 교량, 댐, 터널
- 부두, 항만, 방파제, 호안축조, 준설공사 각종 토목 및 구조물 공사 등

또한 이익상실위험은 건설공사보험 증권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하여 공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완공되지 못함에 따라 피보험자인 발주자가 입는 각종 재정적 손실을 담보한다.

500미터 이상의 교량건설공사, 댐축조공사, 간척공사, 준설공사, 항만공사, 지하철공사, 발전소건설 등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정부계약법에서는 이를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

하고 있으며, 제3자 배상책임은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중 많은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보험 가입은 정부발주 물건 가입조건대로 가입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이 투자자가 되어 사회간접시설 등 특정사업을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공사목적물의 사고의 보상뿐만 아니라 이 사고로 인한 이익상실의 담보가입도 중요하다.

나. 조립보험

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설치, 조립공사 및 화학 공장이나 발전소 등과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조립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건설기계 · 장비 및 주위재산 등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 종합적 보험이다.

조립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개별기계 및 장치** : 발전기, 콤프레셔, 보일러, 공작기계, 프레스, 인쇄기, 크레인, 터빈, 변압기, 배전반, 펌프, 컨베이어 벨트, 케이블선
- **단위시설물** : 공기정화장치, 제어장치, 전기설비, 화학장치, 강구조물(교량, 철탑), 등화설비 등
- **Plant설비(공장)** : 발전소, 제철소, 철강공장, 석유화학공장, 자동차부품 공장, 비료공장, 정유공장, 제지 및 방직공장, 기타 각종 소비재나 생산재 제조공장

조립보험과 건설공사는 기본적인 보험약관과 보상하는 손해는 유사하다.(표1 참조)

〈표1〉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 비교

분 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성 격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좌 동
가입대상공사	각종 건축, 토목공사 (아파트, 도로, 교량 등)	각종 플랜트 및 구조물설치, 조립공사(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등)
공사비내역	총 공사비 중에서 토목, 건축공사비의 비중이 50% 이상인 공사	총 공사비 중에서 설비비의 비중이 50% 이상인 공사
시운전 중에 사고보상	특별약관으로 보상 ☞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을 시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보통약관에서 보상
설계결함 및 제작자결함	보통약관상 설계결함 부담보, 재질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만 담보 설계결함담보 특약첨부 시 설계 결함으로 인한 간접손해 담보	보통약관상 설계, 재질, 주조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부담보, 제작자결함담보 특약 첨부 시, 간접적인 손해만 담보
주위재산손해 (Surrounding Property)	보통약관상 면책이며, 주위재산담보 특약으로 담보 가능	주위재산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재물손해 가입금액에 포함하여 담보가능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한 손해에 담보	보통약관상 면책이며,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담보 가능	보통약관상 담보가능

〈도표1〉 보험약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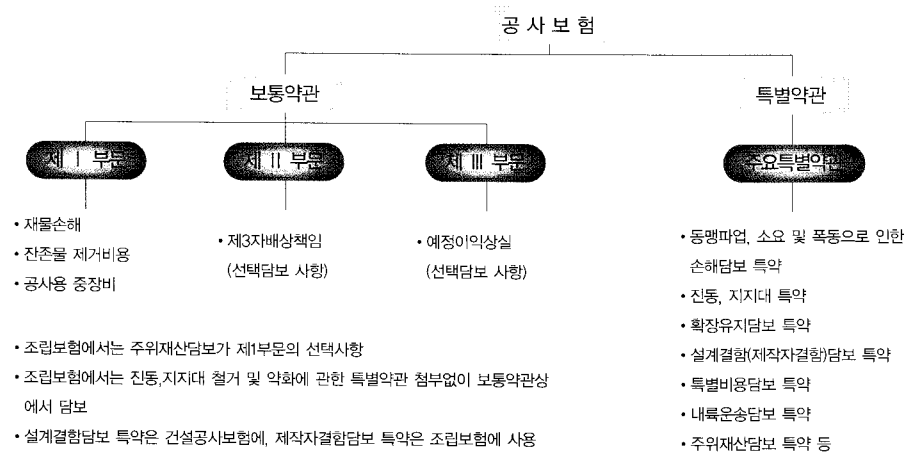

- 조립보험에서는 주위재산담보가 제1부문의 선택사항
- 조립보험에서는 진동,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첨부없이 보통약관상에서 담보
- 설계결함담보 특약은 건설공사보험에, 제작자결함담보 특약은 조립보험에 사용

다. 전문인배상책임

보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설계감리보상보험은 설계, 감리자의 전문직업행위 및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해 설계감리용역 계약의 발주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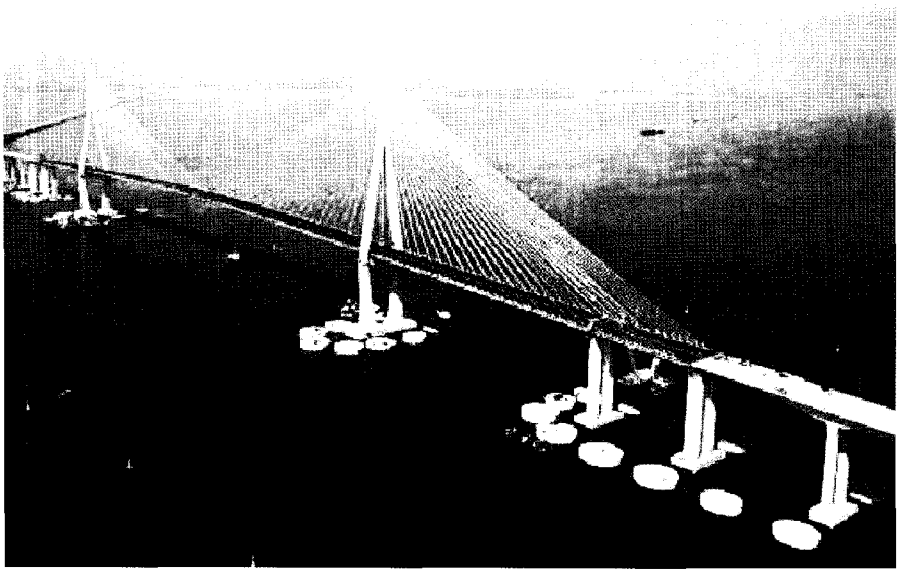

는 데 주로 공제형태로 운영된다.
여기에서 전문직업 행위와 전문직업 행위와 의무란 설계, 공사감리, 공사가능성 검토, 기술적 자료계산, 측량 등을 말하며, 자격 있는 건축기사, 공학기사 또는 측량기사의 지시 또는 직접통제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제가 아닌 개별적으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

(1) 가입대상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건축사의 업무 범위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 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 · 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담보하는 위험

(가) 설계관련 위험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위험을 보상한다. 설계 준비단계에서 현장 지질상태나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나, 구조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의 설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나) 감리 위험

설계감리 또는 시공감리 과정상에 부주의로 인하여 설계나, 시공상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벽 두께가 설계보다 얇게 시공되었는데 감리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기둥에 들어가는 철골이 설계 기준보다 불량하게 시공되어 발생하는 사고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시장현황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협회 등에서 건축사나 기술사들의 설계나 감리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보상한도를 도급금액으로 한다. 개별 계약보다 공제의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통상 대부분의 계약은 공제로 가입을 많이 하고, 공사규모가 매우 큰 경우는 개별로 피보험자가 개별로 가입하기도 한다.

3. 맺음말

CM의 활성화는 건설산업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향후에 더 전문화 · 보편화되고 그 중요성과 책임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CM의 건설사업관리는 관련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수행업무 중 건설공사보험이나 조립보험 등의 적절한 가입을 통하여 해당 건설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 수 있으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위해 의무보험뿐만 아니라 배상책임 가입으로 CM활동에 위축받지 않고 본연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보험 판매실적 현황(2008. 4. 1 ~ 2009. 3. 31)

(단위 : 백만 원)

구 분	건설공사	조립보험	설계감리보증보험	설계감리보상보험
계약건수	1,068	8,126	12,968	14,534
보 험 료	166,579	68,946	2,171	14,044

*자료 제공 : 손해보험 통계연감(2010년 2월, 보험개발원)

*설계감리보상은 2008년 1년 기준 추정